

보수의 입장에서 대학민국 정치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 놓는 정치평론가 전원책 동문을 만나보았다.



학령인구 감소 · 대입 공정성 확보 … 관련 체제 개편 계속돼야

# 대학주보



## 세계평화주간

Peace Bar Festival 2022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 캠퍼스에서 ‘KHU Peace BAR Festival 2022’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평화 혹은 불교,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계 평화의 날과 미원 서거 10주기를 기념했다.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 인포21 나흘간 DB 오류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인포21 시스템 오류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기간 담당 업무와 관련 기능은 사용 불가능했다. 18일 오후 인포21은 정상화된 상태지만, 이번 오류로 인해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정보처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포21 오류에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포21 오류는 지난 14일 12시 40분 즈음에 시작돼, 다음날인 15일까지 계속됐다. 이에 정보처는 16일까지 시스템 긴급 점검이 진행됨을 공지했다. 그러나 양일간의 긴급 점검에도 인포21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에 16일 오후 4시경 점검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인포21의 최종 정상화는 연장된 기간보다 하루 빠른 18일 4시 무렵 이뤄졌다.

인포21 점검 기간이 연장되며 수강학점체회 기간도 변동됐다. 기존에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됐던 수강학점체회 기간이 4일 더 미뤄져 20일까지 연장됐다. 이캠퍼스 역시 접속이 불안정해 일부 비대면 강의와 사이버 강의의 경우 출석 인정 기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번 오류는 이전의 오류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 인포21에 발생했던 오류들의 경우, 시스템 개발 당시 설계상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점들이 오류로 나타난 것이 상당수였다. 그러나 이번 오류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내부 시스템의 손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보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에 지원을 요청했고, 복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 5면으로 이어짐

## 대학 명칭·로고 사용, 상표권 침해 주의해야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특히 청이 학교 허가 없이 대학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의 허가 없이 대학의 로고나 상표 등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희 태권도’, ‘경희 한의원’ 등 대학 명칭을 사용한 간판 역시 학교의 허가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상표권은 법인을 중심으로 대학, 사이버대학, 의료기관 등의 유관부서에서 관리·감독되며 위법한 상표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2002년 스포츠 아카데

미의 상표무단 사용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우리학교 명칭을 사용한 한 방 관련 상품 2건을 명칭 무단 사용으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희학원 측은 “상표권은 학교법인을 제외한 타인의 영리 추구와 상업목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학원업과 의료업에서의 상표 사용 또한 영리 추구 및 상업목적에 해당해 학교법인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학생 또는 동문이 단순히 해당 대학의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대학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학생이라도 ▲상표

사용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영리 행위 ▲상표 변형 및 부적절 사용에 의한 학원의 이미지 훼손 ▲상품 제작 또는 해당 활동 주체가 학원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오인 행위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상당수 대학은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 모자 등에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경희학원 역시 30개의 상표 및 CI를 45개 상품류 전 분야에 대하여 출원 등록을 완료했다. 우리학교는 ▲교육 ▲훈련 ▲연예 오락 ▲스포츠 또는 문화 활동 관련 서비스업 ▲의료 또는 위생 관련 업무 ▲약제 ▲의료용 각종 기기나 제품 ▲문방용품 ▲종이 제품(인쇄물 포함) ▲의류 ▲신발 ▲모자 등의 상품에 상표 등록이 돼 있다. 주요 상표의 경우에는 한글인 ‘경희대학’을 비롯해 영문인 ‘KYUNG HEE UNIVERSITY’와 ‘KHU’ 또한

포함된다.

특히 직접 제작, 판매하거나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는 의류나 문구류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대학 로고가 부착된 의류나 문구 등 일명 ‘학교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해 물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사용 허가가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이윤을 남기는 영리 행위가 돼 상표법에 따라 학교 측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희학원은 “상표는 학교법인이 만들고 학원 내 모든 구성원이 가꾸어온 70년 역사와 문화의 집합체다”며 “상표권 사용 전 궁금한 사항은 법인으로 문의 후 사용하고 주변에서 침해 사례를 목격했다면 즉시 법인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학내 구성원의 주의를 당부 했다.